

【 9 】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안년월일 : 1997. 5. 10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○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은 당연직에서 위원중  
호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○ “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”를 “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”로 함.  
(안 제2조 제2항)

---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구성) 제2항중 “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”를 “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(第57回 - 附錄) 29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<u>부위원장은</u> <u>기획실장이 된다.</u>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부위원장은</u> <u>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~④(현행과 같음)</p>